

체납처분위탁서

변상책임자 성명

주소 또는 거소

체납금 원

위 변상책임자에 대하여 20 년 월 일자 감사원 판정 제 호에 의하여
별지와 같이 변상명령하였으나 이를 변상하지 아니하므로 「감사원법」 제31조제5항
에 따라 체납처분을 위탁합니다.

위 체납처분 완료 후 징수한 변상금은 ○○관서(또는 단체)(변상책임사유 발생 당시
변상책임자가 소속하였던 관서 또는 단체명)에 송금하시기 바랍니다.

20 년 월 일

소속장관·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기관의 장

(관계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) 귀하

210mm×297mm(백상지 80g/㎡)

비고(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)

- 변상책임자의 재산상황을 참고로 첨부할 것